
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<b>보 도 자 료</b>		
	<b>보도</b>	<b>2017. 12. 4.(월) 조간</b>	배포 2017. 12. 1.(금)
담당부서	금융민원센터	김우진 팀장(3145-5717), 임형준 수석(3145-5719)	

## 제 목 : 공짜로 유인하는 사기 할부거래 기승 !

### 1 피해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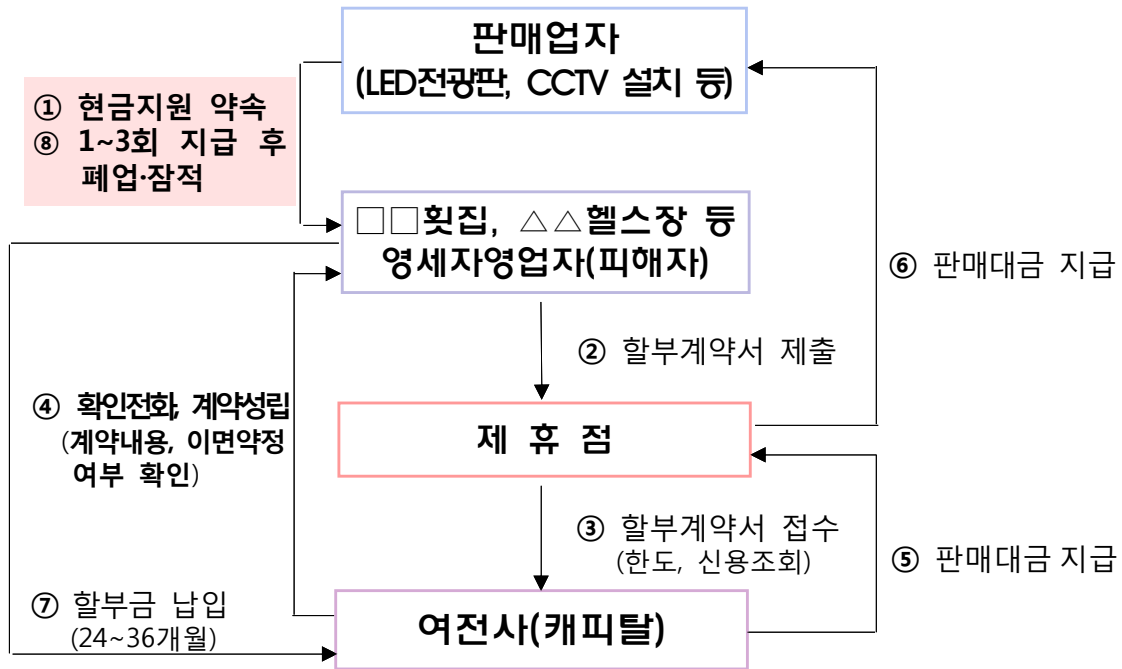
- LED광고판, CCTV를 공짜로 마련할 수 있다고 유인하여 시세 보다 고가로 판매한 후, 현금 지원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돌연 잠적하는 사기 판매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
  - 판매업자는 캐피탈사의 할부금융을 이용하도록 유도하면서 할부금 상당의 현금을 매월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후, 1~3회 정도만 지급한 후 폐업·잠적함
  - 매수자는 저질 상품을 고가에 구매하였음에도, 유지 보수를 받지 못하고, 채무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함

#### 민원사례

- ① 부산에서 횃집을 경영하는 P씨는 CCTV 판매업자가 ‘광고·판촉용 영화 할인권을 횃집 매장에 비치해 주면, 234만원 상당의 CCTV를 월 5천원의 부담으로 설치해 주겠다’고 제안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, 판매업자는 할부금 65,000원 중 60,000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1회만 이행하고, 2개월 만에 잠적해 버림. 캐피탈사는 60,000원 지원의 이면 계약 사항은 자사와 관계 없는 것이므로 잔여 할부금 전액(2,275,000원)을 차질없이 납입할 것을 요구

② 인천에서 헬스장을 경영하는 C씨는 LED전광판 판매업자가 'LED전광판을 설치하여 여러 상품을 광고해 주면, LED전광판과 CCTV를 저렴한 가격(7,020,000원→540,000원)에 공급하겠다'고 약속하여 할부금 195,000원 중 180,000원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LED전광판 2대와 CCTV 4대를 설치하였으나, 현금지원이 3개월만에 중단되고 연락이 두절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민원 제기

### < 현금지원을 빙자한 할부거래 >



## 2 민원 사례의 특징

**1** 판매업자는 주로 할부거래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업자를 주요한 사기 대상으로 삼고 있음

○ 상행위를 위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사업자는 일반소비자와는 달리, 할부거래법상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

\* 청약철회권 :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별다른 제약없이 청약(계약)을 철회(취소)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

\*\* 항변권 : 판매자의 약속 불이행 등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한

**2** 피해자는 대부분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영세사업자로 영업 상황이 어려운 점을 교묘히 공략하는 수법 사용

- 바쁜 시간대에 제대로 생각할 겨를을 주지 않고, LED전광판, 영화할인권 등이 영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식으로 현혹

**3** 대상 품목이 매번 바뀌고 있으나\*, 구매자의 공짜 심리를 이용하는 사기적 수법은 유사성을 띠고 있음

- 향후에도 다른 품목을 대상으로 한, 동일 유형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

\* 커피자판기, 영상광고기, 스마트폰, 블랙박스, 빔프로젝트

### **3** 사기 피해 예방책

□ 금융회사의 인지도를 악용한 사기적 거래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「할부금융」으로 물품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음

- ① ‘이벤트 당첨’, ‘우수회원(VIP) 혜택’ 등과 같은 솔깃한 말로 유인하면서 ‘사실상 공짜’로 상품을 구입하거나,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수법은 사기성 판매술책일 가능성이 높음
- ② 렌탈계약서, 할부계약서 등 기본적인 계약서와는 별도로 판매업자가 확인서, 각서 등을 작성\*해 주며, 자금지원을 약속하고, 이 사실을 캐피탈사에는 비밀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임

\* 어차피 약속을 이행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확인서, 각서 등을 남발

- ③ 캐피탈사 직원이 녹취 목적으로 전화상으로 할부금융 계약 내용을 설명할 때 판매업자로부터 안내받은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답변하여야 사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
- ④ 판매업자는 할부금융 약정기간(2~3년)과 관계없이 캐피탈사로부터 판매대금을 일시에 받게 되고, 구매자(사업자)는 물품에 흠이 있거나, 서비스 제공이 중단되더라도 할부금을 갚아야 하므로 판매업자의 업력·평판, 상품의 브랜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

- ◆ 금융에 관한 피해나 불만사항, 제도개선 의견이 있는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「**금감원 콜센터 1332**」로 전화하시면 다양한 금융상담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(평일 9시~19시, 토요일 9시~13시), 부채관리, 재무관리 및 은퇴·노후준비 등 무료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◆ 금융생활에 필요한 금융지식 및 금융통계 등 각종 정보는 **금융소비자보호처** (<http://consumer.fss.or.kr>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